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9. .

의결 사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	2019. 9. .
발 의 자	김재우 의원 외 5명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9. .

발 의 자 : 김재우 · 송용자 · 안장환 · 이선우 ·
이지연 · 홍난이 의원(6명)

1. 제안이유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김태근 의원, 김택호 의원, 신문식 의원, 장세구 의원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내 용

가. 구성인원 : 9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

나. 존속기간 : 특별위원회에서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 활동내용 :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 김태근 의원, 김택호 의원, 신문식 의원,
장세구 의원 징계심사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87조(징계의 요구)

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